

 국토교통부	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
		배포일시	2019. 8. 2(목) 총 5매(본문 5매)	
담당 부서	규제개혁 법무담당관	담 당 자	• 과장 김명준, 사무관 정은선, 주무관 윤성민, 허준 • ☎ (044) 201-3224, 4816, 4818, 4817	
	도시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상주, 사무관 최종화, 주무관 김대영 • ☎ (044) 201-3706, 3761, 3717	
	건설산업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정수, 사무관 김학원, 주무관 이종언 • ☎ (044) 201-3538, 3509, 3510	
	기술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엄정희, 사무관 김상수, 주무관 황일훈 • ☎ (044) 201-3549, 3555, 3556	
	물류산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완국, 사무관 최은지, 주무관 조우철 • ☎ (044) 201-4016, 4017, 4022	
	자동차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윤진환, 사무관 김영건, 주무관 박성준 • ☎ (044) 201-3835, 3840, 3841	
	대중교통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동준, 사무관 권오혁, 주무관 안승현 • ☎ (044) 201-3823, 3826, 3830	
보 도 일 시		2019년 8월 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1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규제 입증책임제로 규제혁신 추진속도를 높이겠습니다

규제혁신심의회서 혁신성장 저해규제와 불합리한 행정규칙 개선·정비

- 신기술·신산업의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“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도”를 도입(2월)함에 따라
 -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던 규제혁신심의회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후 규제 입증책임제도 방식으로 4차례의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- 국토교통부는 지난 심의회를 통해 민간기업 및 지자체의 건의과제(주로 법령개선 필요사항)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였고,
 - 또한, 법령은 아니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*도 전체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.

* 1차적으로 도시, 건축, 건설, 물류, 자동차, 철도 등 6개 분야를 우선정비 하였고 하반기에 국토, 주택, 토지, 항공 등 나머지 분야 정비 예정

- 이에 따라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개선하는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【유형 ①】 《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 》

▶ **건설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을 확대합니다.**

기존 건설기술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이 미달되어 육아휴직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 발생

개선 현재 기술능력 등록기준 3인 이상인 업종에 한해 이 중 1인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하고 있으나, 이를 기술능력 등록기준 2인 이상인 업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

- 현재는 3인 이상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(전문건설업 29개 업종 중 8개 업종)의 경우에만 1명이 육아휴직을 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,

* 종합건설업은 모든 업종이 5인 이상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필요

- 출산을 제고와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을 기술능력 등록기준 2인 이상인 업종으로 확대가 필요합니다.

- 이에,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(승강기설치공사업 등 17개 업종)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

▶ **특수화물차와 냉장·냉동용 차량간 대·폐차를 허용합니다.**

기존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냉장·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하는 경우 다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 불가

개선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냉장·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하는 경우 다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 가능

- 냉장·냉동용 화물차는 현재 과잉공급으로 인해 신규허가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나,

- 일부 지역의 경우 냉장·냉동용 차량의 공급이 부족함에도 신규허가 제한으로 인해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.

- 이에, 특수용도용 화물차량과 냉장·냉동용 차량간 상호 대·폐차 제한을 완화하여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▶ **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기간이 확대됩니다.**

기존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신청은 국토부 공고기간에만 가능
개선 공고기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- 자동차 인증부품(자동차 휠 등 13개 부품)을 생산하는 제작자는 부품이 안전기준을 만족하는지 시험하는 시설물을 직접 갖추거나 이미 지정된 시설과의 사용계약이 필요하나,
 -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시험시설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은 국토부가 공고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여 관련 기업의 불편함이 있습니다.
- 따라서, 공고기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시험시설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【유형 ②】 《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 》

▶ **건설공사 수행 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화됩니다.**

기존 중대하지 않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도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함
개선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-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는 경우 1개월에서 8개월의 영업정지를 하고 있으나,
 -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경미한 건산업 위반행위*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고 예외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.
- *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세도면 미작성 등
- 이에 따라,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.

▶ 노선 및 구역 여객 운송사업의 차량 대·폐차시 차량충당연한이 완화됩니다.

기존 노선 및 구역 여객운송사업용 차량 대·폐차는 차량이 6년 이내여야 하며, 기존 자동차보다 차량이 낮아야만 함

개선 기존 자동차보다 차량이 낮은 자동차로만 대·폐차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여 해당 문구 삭제

- 노선 및 구역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대·폐차할 경우 차량이 6년 이내여야 하고, 기존 차량보다 차량이 낮은 경우에만 가능하며,
 - 기존 차량보다 차량이 낮은 자동차로 대·폐차를 하기 위해 사업자의 차량 구입비 부담이 증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.
- 따라서, 기존차량보다 차량이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

【유형 ③】 《 불명확한 규제사무의 명확화 》

▶ 개발행위 규모의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겠습니다.

기존 개발행위 시 개발행위 규모에 따라 폭이 다른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나 개발행위 규모의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여 불편 발생

개선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할 때 진입도로의 면적은 제외하도록 산정방식을 명확화하여 불편 해소

- 개발행위 시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도로의 폭이 최소 4m에서 최대 8m 이상인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나,
 -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도로면적의 산입 여부가 불명확하여 지자체 등 현장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이에,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 시 도로면적은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.

▶ **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발급기한을 명확히 하겠습니다.**

기존 건설기술인이 발주청에 경력확인서 발급 요청 시 처리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

개선 경력확인서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명확화

-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을 위한 경력확인서는 발주청에서 발급하고 있으나 처리기한이 불명확하여,
 - 경력확인서의 발급이 지연되는 등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
- 이에,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고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겠습니다.
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향적·적극적인 자세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정은선 사무관(☎ 044-201-481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